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1년 10월 8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10월 13일

라. 상정일자: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1. 10.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생활환경국장 유옥준)

가. 제안이유

❍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안양천 유역에 위치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2021. 5. 1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을 위한 협약체결에 따라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 명칭 및 구성(안 제2조 ~ 5조)

- 명칭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로 칭함

- 서울권역 구로·영등포·양천·금천구청장, 경기권역 광명·안양·군포·의왕시장을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장 1인은 정기회 선출이 원칙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2년 이내일 경우 자치단체장 임기까지만 회장을 수행

❍ 기능(안 제9조)

-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 협약 체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

❍ 운영 및 의결(안 제10조 ~ 제11조)

-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1년마다 1회 개최, 임시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
-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 경비부담(안 제17조)

- 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본 동의안은

- 안양천을 공유하고 있는 서울·경기 권역 8개 자치단체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동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2021. 5. 11. 운영규약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안양천 고도화·명소화 행정협의회”의 주 기능은 안양천 국가정원 등록 추진, 중앙정부 등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및 홍보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임.

- 이번에 제출된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에 영등포구가 적극 참여하여 안양천을 국내 최고의 하천 명소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 협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정한「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른 사항으로 관계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이며,
- 또한, 동의안으로 제출된 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400 호

제출년월일 : 2021. 1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2. 제안이유

○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1) 안양천 유역에 위치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2021. 5. 1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에 따라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나. 명칭 및 구성(안 제2조 ~ 5조)

1) 명칭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로 칭함

2) 서울권역 구로·영등포·양천·금천구청장, 경기권역 광명·안양·군포·의왕시장을 위원으로 구성

3) 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장 1인은 정기회 선출이 원칙

4)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2년 이내일 경우

자치단체장 임기까지만 회장을 수행

다. 기능(안 제9조)

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 협약 체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

라. 운영 및 의결(안 제10조~제11조)

1)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1년마다 1회 개최 임시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

2)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마. 경비부담(안 제17조)

1) 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2)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4. 안양천 명소화 · 고도화 행정협의회 필요성

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공동 추진

1) 안양천을 공유하고 있는 서울·경기 권역 자치단체가 상호 긴밀한 협조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동 추진

나. 안양천 국가정원 등록

1) 안양천을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내 최고의 하천 명소 조성

붙임: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안 1부. 끝.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안)

제1조(목적) 안양천 유역에 위치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2021. 5. 1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에 따라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향후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등록되도록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서 안양천 유역이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협의회의 명칭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안양천 서울권역인 구로구청장·영등포구청장·양천구청장·금천구청장과 안양천 경기권역인 광명시장·안양시장·군포시장·의왕시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을 둔다.
② 회장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4년을 고려하여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2년 이내일 경우, 선출된 회장은 임기까지만 회장직을 수행하며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 중에서 정기회의 시 다시 선출한다.

제6조(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둔다.

제7조(업무의 인수인계) 회장이 변경될 시 전임회장은 후임회장에게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인계하여야 하고 후임회장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와 권리를 선양하고, 위원 상호 간의 신의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2021. 5. 1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 협약 체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 협약서 내용 이행에 관한 사항.
2. 안양천 국가정원 등록 추진에 관한 사항.
3. 중앙정부 등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 공동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5.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및 홍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의회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1년마다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회장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개최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토록 한다.

③ 8개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안양천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종합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15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장은 안건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무협의회에 안건을 회부한다.

⑤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관계 공무원이 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1조(의결) 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소속 국·소·원장 이상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가진다.

제12조(결의사항의 처리) ①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요구)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위원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위원이 직접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처리) 협의회 회장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장이 속한 시 · 구의 업무 담당 팀장이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요구)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①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 팀장으로 구성하고, 상정된 안건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배석,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는 당년도 논의안건을 감안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관계자를 협의회 주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하여 참석 통지한다.

제17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②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8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보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약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